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다2365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다2365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나517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가소727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빌딩관리단

판결 선고2020. 8. 27.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20나517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